

[재]부산기술창업투자원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및 채용기준

1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 1개(전문직) 분야 총 1명

분야	채용형태	직급	인원(명)	해당 직무	비고
전문직 (심사역)	정규직	다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펀드 조성 및 관리■ 글로벌 펀드 조성 및 관리■ 창업기획자 등록 및 운영■ 지분증권 투자 업무■ 투자 및 보증업무	경력직

※ 상세내용 (붙임)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참고

2 자격요건 등

○ 공통 자격요건

구분	자격 요건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정년(60세) 미만인 자
성별, 학력	제한 없음
병역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함.
결격 사유	(재)부산기술창업투자원 인사 규정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서류전형 가점)

- 장 애 인 : 증명서 제출자에 한 해 5% 가점 부여

【결격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4.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자격기준 ※ 상세내용 (붙임)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참고

- 자격요건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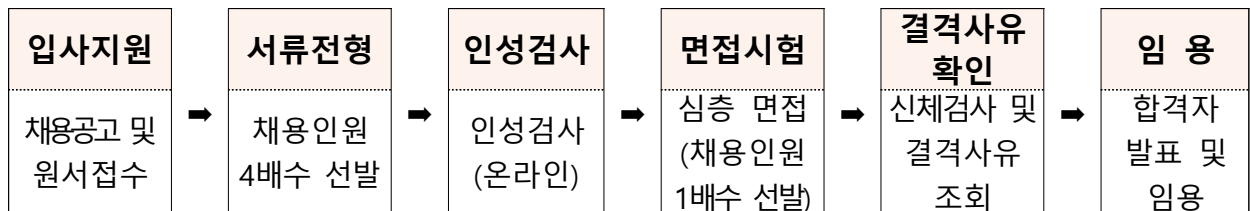
(2) 해외기업 국내 투자 및 유치,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해당분야 기업(기관) 재직 6년

- 경력요건 : 해당 분야 기업(기관)에서 6년 이상 근무를 하고, 해당 직무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직급별 지원가능한 경력 기준 유의사항

1. 일반직의 경우 응시기준(자격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2. 직급별 응시자격 기준의 경력산정은 채용공고일 기준임
3. 해당분야 인정 경력은 채용분야별 직무내용에 한함
4. 경력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경력내용과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를 포함하여 제출서류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 등에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불합격 등 조치될 수 있음
5. 6개월 이하의 근무경력(퇴사하고 다른 기관으로 입사한 경우)은 불인정함
6. 인턴, 아르바이트 근무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7. 국외경력도 국내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함(한글 번역본 및 번역공증서 필요)
8. 5호 및 6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하여 채용이 확정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의 경력은 인정함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합격자 선발

- 전형방법 : 응시자격에 대한 적부 판단 및 정량평가·정성평가 실시

총점(100점)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	
전문직 다급	경력기간(30점)	경력기술서(40점)	자기소개서(30점)

【합격기준】 평가위원 산술평균 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4배수 선정. 단, 각 평가 항목의 점수가 40%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선발배수 범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함

- 서류전형 가산점

항 목	내 용	가 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5%

- 서류전형 세부 사항

구분	평정요소						
정량평가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자격 요건 경력 기준 20점 적용 - 해당분야 초과경력에 대하여 1년에 2점씩 추가 적용(최대 5년,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은 365일로 환산하여 적용 ※ 기간이 중복된 경력은 미합산 ※ 경력기간은 입증가능한 서류를 확인 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오기입 및 허위기재 시 추후 불합격 등 조치될 수 있음 <p>예시) 자격요건이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에서 해당분야 경력 9년인 응시자가 지원하는 경우 → 기본 20점 + 초과경력 2년에 대한 4점 = 24점</p>						
정성평가 (70점)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항목</th> <th>주요평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경력기술서(40점)</td> <td>업무경력, 성과 및 지표, 핵심역량 등을 평가</td> </tr> <tr> <td>자기소개서(30점)</td> <td>조직이해, 문제해결력, 팀워크 등을 평가</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주요평가 내용	경력기술서(40점)	업무경력, 성과 및 지표, 핵심역량 등을 평가	자기소개서(30점)	조직이해, 문제해결력, 팀워크 등을 평가
	평가항목	주요평가 내용					
	경력기술서(40점)	업무경력, 성과 및 지표, 핵심역량 등을 평가					
자기소개서(30점)	조직이해, 문제해결력, 팀워크 등을 평가						
※ 주요경력, 업무성과, 경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 불합격 판단기준

- ▶ 해당분야 자격요건(응시자격, 경력요건 등)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응시자격 및 서류전형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되는 경우
- ▶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

○ 인성검사(필기시험 대체)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 방 법 : 온라인 검사 실시
-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구조화 심층 면접(1:多 방식, 응시자 1인당 50분 내외 소요)
 - ▶ 투자직무계획서(PT: 10장 내외) 발표(20분) + 심화평가(20분) + 인성평가(10분)
 - ※ 면접발표자료 사전 제출, 미제출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 평가요소

평가 요소	배점	평가 정의
조직 적합성	20	1.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비전을 이해하고, 실현 방안을 명확히 인지한다. 2. 조직의 업무 절차와 프로세스를 철저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3. 조직의 문화와 가치를 내재화하고, 조직 발전에 창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4. 조직의 목표와 비전에 부합하는 직무계획을 보유하고, 조직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직무 전문성	20	1. 해당 직무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숙지하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업무 관련 도구와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3.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혁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4. 벤처투자 및 펀드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문제해결력	20	1. 다양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2. 복잡한 상황에서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해결책 실행 후 결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다.
리더십	20	1. 구성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지원하며, 팀의 목표를 달성한다. 2.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고, 팀원 간 협력을 촉진한다. 3. 팀의 성과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끈다. 4. 벤처투자 생태계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	20	1.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2. 상황에 맞는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3. 조직 내·외부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을 보유하여 벤처투자 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다.

※ 면접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인성검사 응시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될 예정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방식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격기준】 평가위원 산술평균 점수의 60% 이상 득점한 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 선정

※ 평가위원 과반수가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저점수로 평정하였거나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최저점수로 평정한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최종 합격 선정 기준

- ▷ (1순위) 법정 가점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일반 가점 대상자(장애인)
→ (3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 결정

- 결격 등 확인 : 8월 중 최종 신체검사 및 결격 확인
- 임용 : 9월 중(예정)

□ **자격요건**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4조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석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로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은 제외한다) 또는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대출심사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마. 회사의 이사(등기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회사를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회사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 바. 전문개인투자자
 - 사.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 초기창업기업 선발 및 투자, 창업보육 등 창업기획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창업기획자 2) 벤처투자회사 3) 창업보육센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
 -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1)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했을 것
 - 차. 그 밖에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 경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 (2) 해외기업 국내 투자 및 유치,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직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해당분야 기업(기관) 재직 6년

□ **경력요건**

채용분야	경력요건	해당 직무
전문직 다급 (심사역)	· *해당분야 기업(기관)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며, 해당직무 업무수행 기간이 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펀드 조성 및 관리 ■ 글로벌 펀드 조성 및 관리 ■ 창업기획자 등록 및 운영 ■ 지분증권 투자 업무 ■ 투자 및 보증업무

*해당분야: 창업지원사업 관리, 펀드 운영·관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투자유치 지원, 기업분석 및 사무행정 분야